

다올저축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특 징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금액		■ 최저 : 1원 이상 ■ 최대 : DB형 - 제한없음, DC형 및 IRP형 - 1억원까지	
계약기간		■ 1년, 2년, 3년	
예금자 보호여부	DC / 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 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적용이율		■ 신규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이자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원미만 절사) ■ 원금×{(1+이율/12) ⁿ -1} (n은 경과월수)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만기처리방법		■ DB형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 DC형 및 IRP형 :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최종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 신규일(최종재예치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 <table> <tr> <th>예치기간</th><th>이 율</th></tr> <tr> <td>1개월미만</td><td>신규일(최종재예치일) 당시의 보통예금 금리</td></tr> <tr> <td>1개월이상 ~ 6개월미만</td><td>약정이율 × 50%</td></tr> <tr> <td>6개월이상 ~ 9개월미만</td><td>약정이율 × 55%</td></tr> <tr> <td>9개월이상 ~ 12개월미만</td><td>약정이율 × 60%</td></tr> <tr> <td>12개월이상</td><td>약정이율 × 70%</td></tr> </table>	예치기간	이 율	1개월미만	신규일(최종재예치일) 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이율 × 50%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약정이율 × 55%	9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 × 60%	12개월이상	약정이율 × 70%
예치기간	이 율												
1개월미만	신규일(최종재예치일) 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이율 × 50%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약정이율 × 55%												
9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 × 60%												
12개월이상	약정이율 × 70%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이율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 신규일(최종재예치일) 당시의 특별중도해지이율 또는 약정이율 <table> <tr> <th>특별중도해지 사유</th><th>적용이율</th></tr> <tr> <td>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 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td><td>특별중도해지이율</td></tr> <tr> <td> 1. 수수료의 징구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 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td><td>약정이율</td></tr> </table>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 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특별중도해지이율	1. 수수료의 징구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 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 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특별중도해지이율												
1. 수수료의 징구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 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약정이율												
분할 지급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불가) ■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3.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 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 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퇴직연금 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사금리가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1544-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aolsb.com)**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